

부서담당자는 미처리 청구서를 즉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4763

처리기한	2017년 9월 5일까지(유기한 민원)	주관부서	논현2동
------	-----------------------	------	------

회원가입 및 처리사정방법	<p>☐ 회원가입 : 정보공개시스템공무원창구(인터넷 주소창에 http://admin.open.go.kr 입력) 접속 ⇒ 사용자신청 ⇒ 민원여권과 승인 ⇒ 공인인증서 등록 ⇒ 로그인</p> <p>☐ 부서담당자(부서 총괄자)가 처리자(업무담당자)지정 방법 정보공개시스템공무원창구(http://admin.open.go.kr) 접속 ①청구관리 ②부서청구현황 ③제목클릭 ④처리자지정</p>
---------------	--

정보공개청구서 처리 방법	<p>(1) 새올행정시스템⇒업무관리시스템⇒기안⇒공용서식⇒[01.정보공개결정통지서] 전자결재 후</p> <p>(2) 정보공개시스템공무원창구(http://admin.open.go.kr)에 접속하여 처리결과 입력</p> <p>①로그인 ②청구관리 ③부서청구현황 ④제목 ⑤결정 ⑥내용 및 수수료 납부일, 공개일시 등 세부내역 입력 [1. 공개여부 선택 2. 공개내용(개괄적 기재 / 비공개 시 내용 및 사유 기재) 3. 공개일시 등록 4. 수수료 금액, 납부일 등록]</p> <p>※ 공개일시 : 정보공개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 수수료 납부일 : 정보공개 결정한 날부터 5일 이내</p> <p>⑦저장 ⑧수동결재선택 ⑨전자결재 결재일자, 기인자, 결재자, 직급, 결재문서번호 입력 ⑩등록 ⑪통지 ⑫수수료 납부확인 ⑬공개자료 등록 ⑭ 공개일시 ※ 공개자료는 수수료 납부 확인 후 제작</p> <p>★ 수수료가 없는 경우 : 결정입력 시 공개자료 동시 입력(기존 처리방법과 동일)</p> <p>★ 수수료가 있는 경우 : 결정통지하고 수수료 납부확인 후 공개자료 입력(공개일시)</p>
---------------	---

※ 처리기한 : 10일 ※ 기간연장신청방법 : 동일(10일연장)	청구방법	정보수령방법 (청구인)	결정통지방법 (처리과)	수수료납부 (청구인)	청구자료 공개 (처리과)
	온라인	온라인	전자결재 ⇒ 정보공개 시스템을 통한 통지 (* 문서통지 생략)	신용카드, 휴대폰, 계좌이체 (강남구 G4C 공동 계좌 : 계좌이체 시 자동 팝업창열림)	청구인 수수료 납부 확인 ⇒ 공개자료(첨부물) 제작 및 등록 ⇒ 공개일시
		전자우편	상 동	상 동	납부결과확인(정보공개시스템) ⇒ 공개자료 제작 및 전자우편 송부
	오프라인	방문	전자결재 ⇒ 정보공개결정 통지서 출력 ⇒ 문서통지 (우편, FAX, 전자우편)	처리과 방문 ⇒ 수수료 납부	본인확인 ⇒ 자료 공개 실시 ⇒ 처리과 보관용 결정통지서에 인증기 소인 후 보관
	팩스,우편	상 동 ※ 결정통지 시 처리과 입금 계좌번호 기재	처리과 계좌에 입금	수수료(우송료)입금확인 ⇒ 공개자료 송부 ⇒ 수수료 인출 ⇒ 처리과 보관용 결정통지서에 인증기 소인 후 보관	

☐ 수수료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조례) ※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않음

구분	열람(원본·전자파일)	원본의 사본(출력물)·복제물	전산자료	
			사본(종이출력물)	복제
문서·대장·도면·카드 등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30분마다 1,000원	· B4이하(1매 기준) : 250원 · - 1매 초과마다 50원 · A3이상(1매 기준) : 300원 · - 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1매 기준) : 250원 · - 1매 초과마다 50원 · A3이상(1매 기준) : 300원 · - 1매 초과마다 100원	· 1건 1MB 이내 : 무료 - 1MB 초과시 1MB마다 100원 (단,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전자파일로 변환작업 필요시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한 지움 및 전자파일로 변환작업 필요시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동일

정보공개 시 청구인확인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2항)	<p>1. 본인확인 시점 : 청구인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임의 확인은 정보공개 시점에서 실시</p> <p>2. 본인확인 필요성 판단 : 불특정 다수인에게 널리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나, 특정인에게 국한하여 공개할 수 있는 정보인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 확인 실시</p> <p>3. 본인확인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법인(단체) : 사업자등록증, 법인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임의(법정)대리인에게 공개 시 : 위임장(법정대리인 증명 서류), 청구인 및 수임(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p>4.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 : 특정인에게 국한하여 공개할 수 있는 정보인 경우에는 청구인 또는 대리인을 방문하도록 하여 본인확인</p>
--	---

기타문의사항 행정안전부 헬프데스크 ☎ 1588-2572 / 민원여권과 담당 : 김재경 ☎ 행정 5363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16. 12. 13.>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서

접수번호 4219002	접수일 2017. 08. 23.	처리기간 10일(2017. 09. 05.)
청구인	성명(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이용수	주민등록(여권·외국인등록)번호 680208-*****
	주소(소재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주우체국사서함	사업자(법인·단체)등록번호
	전화번호 000-000-0000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청구 내용	[정보공개청구서] 첨부파일(청구서원본) 참고 제주도제주시장 경기도부천시 오정구청장 인천시가정고등학교장 서울시노원구상계1동장 서울시관악구신림동장 서울시중구명동장 서울시강남구논현2동장 서울시강동구고덕2동장 서울시강북구번1동장 서울시강서구가양3동장 서울시광진구군자동장 서울시구로구고척2동장 서울시금천구독산3동장 서울시종로구신교동장	
공개 방법	<input type="checkbox"/> 열람·시청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본·출력물 <input type="checkbox"/> 전자파일 <input type="checkbox"/> 복제·인화물 <input type="checkbox"/> 기타 ()	
수령 방법	<input type="checkbox"/> 직접방문 <input checked="" type="checkbox"/> 우편 <input type="checkbox"/> 팩스전송 <input type="checkbox"/> 정보통신망 <input type="checkbox"/> 기타 ()	
수수료	<input type="checkbox"/> 감면 대상임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감면 대상 아님 감면 사유 해당없음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2017년 08월 23일

청구인

이용수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강남구청장) 귀하

접수증

접수번호 4219002	청구인 성명 이용수
접수부서 민원여권과	접수자 성명 김재경 (서명 또는 인)

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2017년 08월 23일

서울특별시강남구청장

유의사항

1.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청구사실이 제3자에게 통지됩니다.
2. 정보 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